

##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 - 14호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단태양광)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7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1.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산단태양광) 추가(2차) 지원공고

## 1 지원사항

### □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기업 중 공장,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자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예산 : 신·재생에너지 이용 설비 설치자금(산업단지 태양광)

□ 지원규모 : 1,000억원

### 지원대상 태양광 발전 사업

#### □ 산업단지 태양광

- ◇ 산업단지(국가산단·일반산단 등)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
- ◇ 공장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 \* 공장등록 된 공장에 한함
- ◇ 산업단지 부지, 공장 건물 및 지붕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

주1)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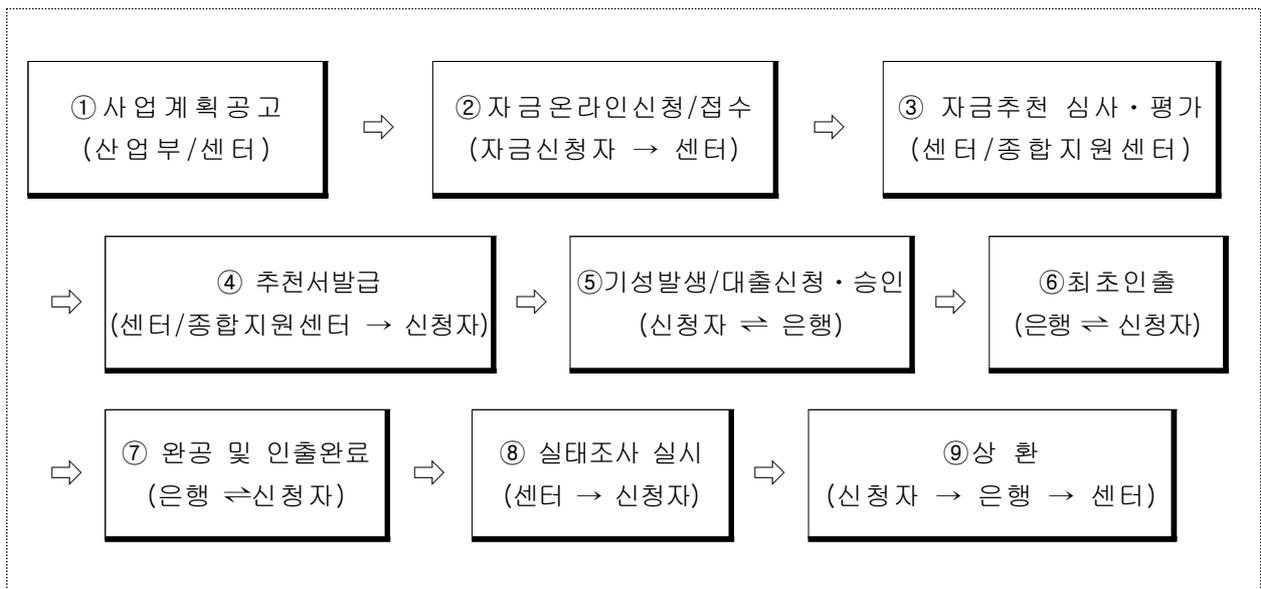
주2) 공장등록증명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 지원조건

구 분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 기금	시설자금 (산업단지태양광)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75%)	중소기업:90%이내 중견기업:70%이내

주1) 태양광은 지침에 따라 3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천 및 용자 절차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www.knrec.or.kr](http://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 7. 27. ~ 계속

\* 예산 소진 시 종료

##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사업자 점검사항

### □ 산업단지 태양광 용자가능 요건

- ① “산업단지입주 계약 확인서”를 제출 가능한 산업단지 사업주가 산업단지 부지에(건물 및 토지 포함)태양광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산업단지입주 계약확인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 ② “공장등록증” 제출 가능한 공장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공장등록증, 건물 등기부등본)
  - 신축 공장의 경우 연내 준공이 되는 공장에 지원 가능(공장신설승인서)
  - 공장등록증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On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③ ①번 부지나 ②번 건물을 임차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옥상만 임차하여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임대차 계약서, 사용 승낙서 확인)

### □ 유의사항 요약

- ①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에서 지원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② 2020년 사업에 한해 지원가능
  - '19년 10월 이후 계약분에 한해 지원가능('20년 사업은 진행가능)
  - 시공업체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

## 2 유의사항

### □ 사전확인 사항

-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
- 당해년도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금 신청자 및 시공을 위임받은 자는 발전소 예정지의 계통연계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 □ 자금신청 및 추천

- 온라인 접수 순서대로 자금추천 심사·평가가 진행되며, 평가점수 60점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자금 추천
-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신청의사를 밝힌 희망자는 8. 7(금)까지 관련 서류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우선 심사·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실시(기간 : '20.6.25~7.7)
- 예산 소진 시, 접수 순서대로 예비순위를 공지하여 포기 등 잔여 예산 발생 시 검토·심사 및 자금추천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추천 후 본 공고 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등)를 이유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 부터 배제처분을 받았거나 관련 조사, 수사 등이 진행 중인 자(발전사업자, 시공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별도 공지)와는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당초 추천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용량, 모델명, 금액, 소재지, 시공업체, 대출은행 등) 및 기타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추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변경 설치할 경우 추천 취소 및 원리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추천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당해년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계약일자 기준)
- 최종 대출은 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능력 등을 고려한 각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따라 결정됨(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사전확인 필요)

- 자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5호) [별표 9] 참고
- 태양광사업은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인출완료 전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최소 신청액은 3,000만원이며,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임
-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까지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태양광 장기고정가격 계약(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0조의1내지2, 산업부 고시 제2020-105호)은 정책 금융지원과 별도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됨
-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심사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

## □ 설비 성능 등

- 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신청자는 성능·용량·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없음

## □ 자금신청 반려대상

- 서류보완 및 반려사항 발생 시 “신·재생에너지센터-전자민원”에서 확인가능하며, 해당사항은 SMS 발송으로 별도 안내
- 자금지원 대상(사업·시설)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7]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및 시공업체와 자금 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 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 3 기타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7호)”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신청자는 본 공고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상세내용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참조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 4

## 제출서류

서류	발급기관
각서	신재생에너지센터( <a href="http://www.knrec.or.kr">http://www.knrec.or.kr</a> ) → 부서 및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금융지원 → (하단)관련자료서식 다운로드
계약서(전년도 10월1일 이후 작성 분)	시공업체와 작성
시설명세서	시공업체와 작성
사업자등록증	관할 세무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시공업체
용자금 대출심사가능 확인서	신재생에너지센터( <a href="http://www.knrec.or.kr">http://www.knrec.or.kr</a> ) →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정책 → 금융지원 → (하단)관련자료서식 다운로드
부지(또는 건물)관련 확인서류 (등기부등본)	1. 사업자 소유일 경우 : 등기부등본 2. 임대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소유주 인감증명서, 소유주 등기부등본
발전사업허가증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용량 기준에 따라 시청(군청) 또는 도청 발급
개발행위허가서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공작물축조 관련 서류를 제출(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보급량 산출근거	신청자(업체) 작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설비 공급업체(모듈은 최소효율 이상 확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사업자도 제출필요)	신재생에너지센터( <a href="http://www.knrec.or.kr">http://www.knrec.or.kr</a> ) → 부서 및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금융지원 → (하단)관련자료서식 다운로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청(개인사업자는 해당없음)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	건물위(옥상 등) 설치시 제출
(태양광 사업) 보험 또는 공제증서 (금융기관에 완료 보고 시 제출)	5억이상 설비 : 기존 보험사(금융기관) 이용 소규모 태양광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과 5개 보험사( <a href="http://www.solarins.co.kr">http://www.solarins.co.kr</a> , Tel : 1522-5159)를 통해 가입 가능
계통연계 사전확인서	계통연계가 가능한 경우 우선 지원, 연계불가능한 경우 확인과정을 거쳐 지원 (자금신청자와 시공업체 작성)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을 통한 “입주기업 확인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 계약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팩토리On)
타인 건물, 토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서, 토지 및 건물이용 동의서 (소유주 인감증명서, 소유주 등기부등본 포함)

※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관할 도에서 조례로 정한 용량 이상은 도청에서, 미만은 시청 또는 군청에서 신청합니다.

예) 경기(200kW), 강원(100kW), 충북(100kW), 충남(500kW), 전북(100kW), 전남(1,000kW), 경북(1,500kW), 경남(300kW) 등

※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1장2절에서 정한 허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마련한 조례에 따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54-3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 신청서(시설자금)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일 반 현 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본사주소					
		(우)	☎			Fax
	투자지주소	(피투자업체명 : )				
		(우)	☎			Fax
	업종(번호)		상시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주생산품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중견 <input type="checkbox"/> 중소 <input type="checkbox"/> 개인, 비영리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설립일자		녹색인증	<input type="checkbox"/>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연료 : toe/년, 전력 : MWh/년 합계 : toe/년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휴대폰		
신 청 내 용	신청분야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시설자금				
	시설명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증설 <input type="checkbox"/> 개체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증설 <input type="checkbox"/> 개체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증설 <input type="checkbox"/> 개체	
	에너지원		설치용량			
	설치장소					
	총사업기간	00.00.00 ~ 00.00.00		계속 사업	전년도 추천번호	
	총투자액	백만원			연도별 추천 신청액	1차년도
추천신청액	백만원		2차년도			백만원
			3차년도			백만원
담보제공방법 (금융기관에 제공)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보증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용자취급 은행				
<p>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용자자금 추천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p> <p>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p>						

**시설투자 계획서**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http://www.knrec.or.kr))

시설투자 목적

시설의 주요 특징(자금지원 조건 충족 여부 등 기재)

## 시설투자 기대효과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http://www.knrec.or.kr))

###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 기대효과

구 분		에너지 생산효과, 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총 생산량 (A)	단위	생산량	생산금액(백만원)
	연료(toe/년)		
	전력(MWh/년)		
	합계(toe/년)		
자체 에너지 소비량 (B)	단위	소비량	사용금액(백만원)
	연료(toe/년)		
	전력(MWh/년)		
	합계(toe/년)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toe/년) ( A - B )		기대량	기대금액(백만원)
부대효과	금 액 :           백만원/년		
	내 용 :		
	투자비 회수기간	년	부대효과 포 함 회수기간
			년

### 신재생에너지 생산효과 산출식



**시공업체 상세내역**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시공업체 (1개 필수, 계약금액순 상위 3개 기재)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서		직책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서		직책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서		직책	



## ▶ 첨부서류 안내 ◀

### 1. 계약서

-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사항과 서명날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계약서에는 총 공사금액, 부가세(VAT)별로 작성해야함
- 투자소재지는 신청서에 기재한 투자소재지와 일치해야함

### 2. 상세내역집계표

### 3.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 4. 부지매입 관련 증빙자료

-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 건축구조안전진단보고서(건물 및 공장옥상 설치 시)

### 5. 발전사업허가증(발전설비에 한함) - 발전사업허가조건 필수 첨부

### 6. 각종 인허가사항

- 개발행위허가서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 환경 관련 인허가 서류 등

### 7. 기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7호 서식]
- 신재생에너지보급량 근거자료
  -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보급량 산출근거 제시

### 8. 각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

- 각서 [별지 제52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 각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할 경우에만 자금신청을 하여야 함
  - 업체명에는 추천신청서에 기입했던 업체명(개인은 개인명)을 기입
  - 하단의 대표자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명을 서명하고 날인
-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지 제53호 서식]

### 9. 그 외 동 지침 [별표 9]에 따른 공통 제출서류, 해당사업 제출서류, 설비별 제출서류 필수 제출